

이어도 쟁점과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강 병 철 *

〈목 차〉

- I. 서 론
- II. 이어도 쟁점의 주요 내용
 - 1. 유엔해양법협약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
 - 2. 배타적경제수역확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 III.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군전략의 변화
 -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포위전략
 - 2.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 IV. 맺음말: 이어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I. 서 론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교류·협력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 부문의 협력과는 달리 군사·안보 또는 정치 부문에서는 협력보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유럽의 통합의 경험이 무색하게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해양갈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간의 해양영토

* 이어도연구회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를 둘러싼 분쟁은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냉전 이후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갈등 영역 중의 하나가 해양갈등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군사적 힘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해양갈등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하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가 ‘미·중 격돌 불가피론’을 예견하는 배경에는 강대국들이 현실적으로 생존과 안보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패권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¹⁾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한국도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후 중국과 중첩되는 해양영역경제획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해양경제획정에서 이어도가 중심에 있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이어도는 양국이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양국은 서로 역사적 문화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중암초인 이어도는 도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양경제획정 이슈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1996년 이후에 부상하였으며 아직까지 직접적인 무력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언제든지 악화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갈등 이슈로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 들어 부상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어도에 관한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이 명료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으며 영토문제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간의 쟁점을 검토하고 해군전략의 변화에 따른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 해양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해군전략의 변화와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의 내용을 검토하고,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이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도의 지정학적(geopolitics)·안보적 가치 등을 고려한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의도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어도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이 왜 어려운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인민해방군해군의 문헌과 미국 의회조사보고서 외에 연구소 및 다수의 전문가들의 논문과 자료를 토대로 지역의

1)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p.41.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해군전략의 변화와 주변국가들과 동맹 및 협력관계를 맺어 울타리를 형성하여 중국의 팽창을 가두려는 미국의 포위전략을 검토하여 이어도 쟁점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려 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유엔해양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도입으로 촉발된 이어도 쟁점을 검토하겠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을 분석하여 이어도해역의 안보적 이해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겠다. 결론적으로 이어도쟁점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려 한다.

II. 이어도 쟁점의 주요 내용

1. 유엔해양법협약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

국제사회는 해양에 대한 규범을 세우려고 시도하면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제해양규범은 17세기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자유해양론’(mare liberum)과 셀든(John Selden)의 ‘폐쇄해양론’(mare clausum) 간의 논쟁으로 대표된다. 1609년 그로티우스의 해양자유주의 주장과 영국의 존 셀덴(John Selden)이 1635년 간행된 그의 저서 ‘폐쇄해론’(Mare Clausum)을 통해 어업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던 영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서로 상충되는 국제사회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해양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상호 대립되는 국가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의 원칙과 공해자유(freedom of high seas)의 원칙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두 원칙 간에 지속적인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형성되어 발전하여 왔다.²⁾ 해양강대국들은 ‘자유해양론’을 선호하였으나 1945년 미국이 ‘트루만 선언’(Truman Proclamation)을 공포하면서 ‘폐쇄해양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유엔해양법회의의 끝에 탄생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³⁾ 국제해양규범으로 유엔해양법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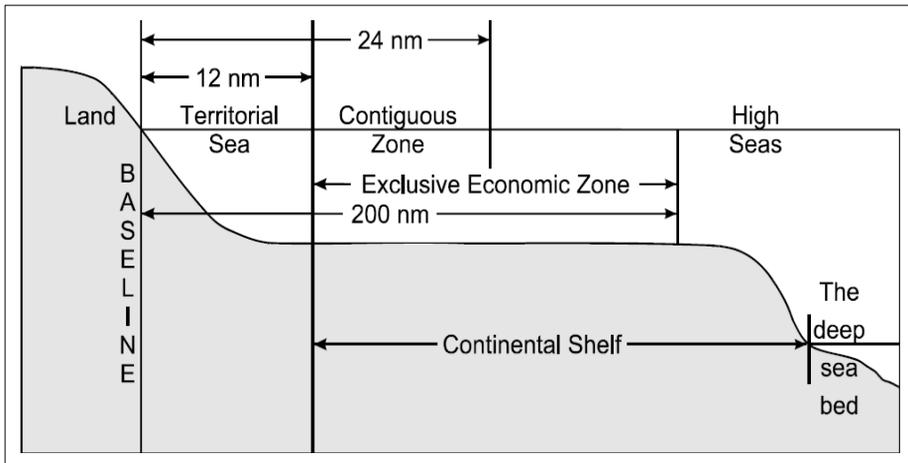
2) E. D. Brow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1994), p.6.

3) 유엔해양법체제에 대하여 1980년대에 레이건대통령은 거부하였으며 1990년대에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행정부는 가입서명을 하였지만 미국의회에서 아직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국가 간 협상을 거쳐 1982년 4월 30일 채택되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게 되었다. 연안국들은 해양경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획정하려고 유엔해양법 협약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해양을 육지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경제적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유엔해양법이 1994년 발효되자 한·중·일 동북아 3국은 모두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으며 200해리 수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었다. 유엔해양법 협약 내용 중에서도 12해리 영해 외측의 수괴(water column)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결합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도입은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물론 EEZ 내에서라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전선 및 도관(導管) 부설의 자유, 그리고 이들 자유와 관련된 해양 사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 국가 간 차이가 있다. 중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경제적활동에 대한 관할 외에도 외국해군의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

〈그림 1〉 해양의 법률적 경계



* nm: nautical mile(해리)

자료: Department of Navy, *The Commander's Handbook on the Law of Naval Operations*, [http://www.usnwc.edu/getattachment/a9b8e92d-2c8d-4779-9925-0defea93325c/1-14M_\(Jul_2007\)_NWP](http://www.usnwc.edu/getattachment/a9b8e92d-2c8d-4779-9925-0defea93325c/1-14M_(Jul_2007)_NWP) (검색일: 2013.4.5)

4)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p.4.(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그림 1〉에서 보듯이, 연안 국가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범위 내에서 영해와 영해를 포함하여 기선에서 200해리까지 EEZ를 관할할 수 있다. 연안국은 EEZ 내에서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의 탐사개발과 수역의 경제적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인공 도서나 해상구축물의 설치와 이용, 해양오염의 방지 및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관할권도 소유할 수 있으며 EEZ 안에서는 연안국이 전면적으로 어업활동을 관할하도록 했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 후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1996년에 한·중·일 3국에 대해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각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였으나, 한·중·일 간 상호 면해 있는 바다의 폭이 400해리 미만인 관계로 경계획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 쟁점의 본질인 해양경계획정은 1996년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2.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1)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이어도 쟁점의 핵심인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중간선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에서 이어도가 수중암초로 해양법적으로 기선이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중국과 영토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 당국자 간에 배타적경제수역 획정협상이 16회 진행된 것⁵⁾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에 관한 한국정부나 중국정부의 입장은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한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⁶⁾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타난다.

5) Jeremy Page, “China, South Korea in Row Over Submerged Rock,” *Wall Street Journal*, (March 14, 2012)

6) 외교통상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외교통상부보도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006. 9.15)

제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1.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하여 있으므로 한·중 양국간 EEZ 경계 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권원내에 속하는 수역입니다.
2. 따라서 우리의 EEZ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써 해양법협약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3.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양국간 EEZ 경계획정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양국은 96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EEZ경계획정회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어도는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있는 수중 암초이며,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때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르며 한·중·일 3국에 의해만 들어지는 삼각형의 가운데 해역에 있다. 따라서 이어도는 비록 수중암초이지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군사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어도는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와 남하하는 황해의 한류,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이어도 어장은 동경 125도 10분 56.81초(북위 32도 07분 22.63초)에 위치하며 해구로는 250해구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상업적 이용가치가 높은 조기, 갈치, 강달이, 오징어 등이 어획되고 있다.⁷⁾ 주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이어도 주변수역은 해양환경 및 기상관측 등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거점이며 해난구조와 어업 지원을 위한 기지로 최적지이다.

한국은 이어도해역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유엔해양법에 근거하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획정한다는 논리에서 적어도 이어도해역까지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명박대 통령도 "이어도 쟁점이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⁸⁾이라고 말하여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 강석규, "이어도 어장의 경제성 평가," 『이어도연구』, 창간호(2010), p.98.

8) Korea Times, "Lee: leodo will remain under Korea's control," *Korea Times*, (2012.3.12)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양국이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지점에 이어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한국 쪽에 훨씬 가까우므로 중간선으로 획정하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 일관된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2)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6년 9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친강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자 중국정부는 2000년과 2002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가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고 밝히면서 중국은 국제법 규범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이며 한국이 중첩되는 경제수역에서 진행되는 일방적인 활동을 반대한다⁹⁾고 발표하였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면서 ‘쑤옌자오’(蘇岩礁;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된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암초로서 이어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토분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이어도가 수중의 암초로서 섬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에는 2007년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중국어명: 쑤옌자오 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며 각종 고대 문헌에 기록돼 온 쑤옌자오는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들도 그동안 “이어도는 장쑤(江蘇) 외해의 대륙붕의 연장된 일부이자 지질학적으로 창장(長江) 삼각주의 해저구릉으로 오래 전부터 산둥(山東), 장쑤, 저장(浙江), 푸젠(福建), 대만 등 어민들의 어장이었다”며 중국의 영토임을 부각시켜 왔다.¹⁰⁾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개 자료를 신는 ‘해양신식망’은 2007년 12월24일 이어도 관련 항목을 기술하면서 “쑤옌자오는 중국의 영해이자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중국 민간단체나 학자들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eign Ministry Spokesman Qin Ga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14 September 200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6)(<http://www.fmprc.gov.cn/eng/xwfw/s2510/t272110.htm> ;검색일 2013, 4,5)

10) 『조선일보』 2008년 8월 7일. “중국 이어도 편입시도 노골화” 참조.

주장한 적은 있으나, 정부 기관이 이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¹¹⁾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중국 국무원 국가해양국이 운영하는 해양신식망은 내용을 수정했으나 하루 만에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간 뒤 다시 영토 주장을 철회했는데 2008년 8월 15일 이어도(중국어명: 쑤옌자오 <蘇岩礁>)에 대한 최신자료를 올려 “이어도는 중·한 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이 겹치는 지역에 있다”면서 “귀속 문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압박한 방향을 앞두고 이어도 문제가 더 이상 양국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²⁾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국가해양국장인 류츠구이(劉賜貴)는 2012년 3월 3일 중국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 해양국이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관할해역을 정기순찰하며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현재 해양국 소속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순항 범위에 이어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선 및 항공기의 정기순항 해역에 대해 북쪽으로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海溝), 남으로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쩡무안사(曾母暗沙·제임스 사주)에 이르며, 이어도(쑤옌자오)와 다오위다오, 중사군도(中沙群島)의 황옌자오(黃巖礁) 및 난사군도의 제도가 중국의 전체 관할 해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¹³⁾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의 이어도 관할권 발언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반발하자 중국 당국은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기능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쑤옌자오(蘇岩礁)가 영토분쟁이 아닌 경계획정 문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조속히 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건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에서 일방의 행위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11) 『한겨레신문』 2008년 8월 8일. “이어도 ‘제2의 독도’ 되나” 참조.

12) 『조선일보』 2008년 8월 16일. “중(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다시 철회” 참조.

13) 『노컷뉴스』 2012년 3월 10일. “中 순찰범위에 '이어도' 포함...韓·中 신경전” 참조.

Ⅲ.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군전략의 변화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포위전략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도 변화하고 있는데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공식수교 이래 1997년 ‘선린우호관계’에서 2002년 ‘협력동반자관계’로 2007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거쳐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군사안보 관계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2012년 7월 3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자위적 차원에서 우리 군이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중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회담에는 이용걸 국방부 차관과 마샤오텐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했으며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도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시시켰다.¹⁴⁾

중국이 한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안보적 쟁점 특히 해양갈등에서는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역패권국으로 등장하여 지역의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4년마다 미국의 총체적 안보·군사전략을 담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06년도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포위 전략이 언급되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장래에 부상하는 강대국이 호전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울타리로 가뒤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중국이 지역패권으로 부상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군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2011년에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지구적 발전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고 지역의 주요국의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들을 실현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하다”¹⁶⁾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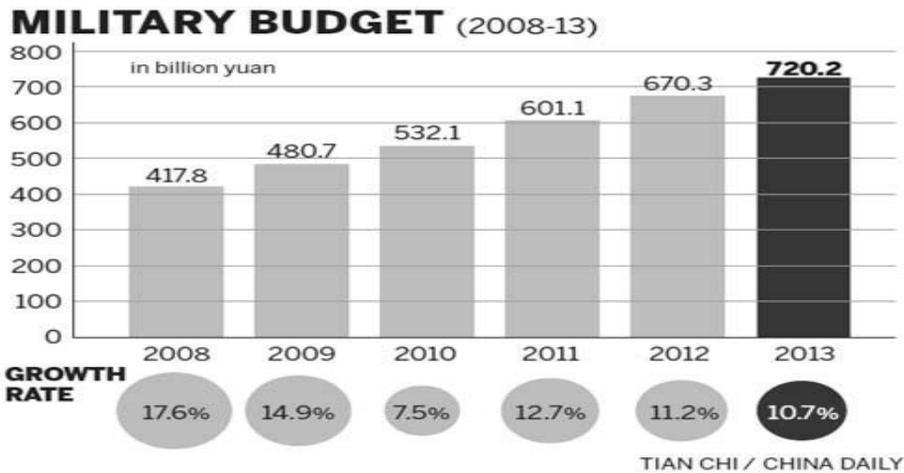
14) 『중앙일보』 2012년 7월 31일. “한중 국방전략대화…軍 “北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 중에 전달” 참조.

1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27-28.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으로 미국의 외교중심을 옮기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대아시아 정책의 강화가 대중국 견제 및 포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¹⁷⁾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그에 따른 군사적 현대화는 주변국가들에게 군비경쟁을 하도록 하였고 미국의 시각에서는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려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중국의 국방비(2008-2013)



출처: Wu Jiao, "Defense budget growth slows", China Daily(2013,3,6) p.5.

〈그림 2〉에서 보듯이 중국의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에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대변인 리자오싱(李肇星)은 중국의 2012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6702억 위안(1064억 달러)라고 밝혔다.

중국은 국방비의 증가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인식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리자오싱(李肇星)은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8%로 2008년 1.33%보다 낮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중국은 방어적인 성격의 국방 정책을 펴고 있어 다른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중국의 유한한 군사력은 주권수호와 영토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

16)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17) Xinhua, "U.S. owes China convincing explanation of true intentions of its Asia Pivot policy," *Xinhua*(2012.9.3)

였다.¹⁸⁾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 제출한 2013년 중앙과 지방 예산 초안을 보면 중국 국방예산 지출은 7201.68억 위안(약 1142억 달러) 으로 이는 작년보다 10.7%가 증가한 것이지만 2년 연속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⁹⁾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이 중국 포위 전략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TPP는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2010년부터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도 TPP 에 참여할 전망이다. 위젠화(俞建華·유건화)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일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각료회의 직후 “중국은 어떤 나라로부터도 TPP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²⁰⁾

중국은 지역의 패권으로 부상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4월 16일 오전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시종 평화적 외교 정책, 방어적 국방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군사적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²¹⁾

미국정치지도자들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아시아로 회귀하면서 현재의 규범을 따르는 국제질서를 증진시키고 지지하겠으며 국제관계와 주둔으로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지구적 안보를 위한 미국의 재균형적 전략적 접근의 핵심적인 요소는 국제관계, 주둔, 법적인 질서라고 주장하고 있다.²²⁾ 미국 정치인들이 자주 부인하고 있으나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으며 미군의 군사전략가들은 명백한 중국해상교역의 요충지인 아시아지역에 군사배치를 진전시키고 있다.²³⁾

18) Mandip Singh and Lalit Kumar, "China's Defence Budget 2012: An Analysis", *IDSA Issue Brief*,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2012), p.2.

19) Wu Jiao, "Defense budget growth slows", *China Daily*(2013.3.6).

20) 『중앙일보』, “미·중, 하와이 ‘TPP 충돌’”(2011.11.14) 참조.

21) Xinhua, "China issues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Xinhua*(2013.4.16)

22) Jonathan G. Odom, What Does a "Pivot" or "Rebalance" Look Like? Elements of the U.S. Strategic Turn Towards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Waters,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4, No. 1, (2012), p.31

2. 중국 해군전략의 변화

중국은 과거 대륙세력으로 해양력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육군을 중심으로 소련, 베트남, 인도, 미국에 대비하여 전력을 정비하였다. 해군전력은 핵전력과 공군전력에 비하여도 미미하였다. 해군은 지상군의 작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므로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30년 동안 육군장성이 해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했으며 1980년대까지 연안방어에 주력하였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실행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육군중심의 방어전략은 변화되었다. 냉전이후에 중국은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 및 핵전력과 미사일체계의 발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해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류화칭(劉華淸)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중국의 전략개념이었던 “연안방어전략”을 연안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근해수역으로 확대하는 “해방어전략”으로 수정하였고 그 범위를 더 확장한 “적극적 근해방어전략”을 정립하였다. 중국해군이 원양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양에서 해군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시기에 두 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여 중국해군이 원양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였다. 중국해군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넘어서 2000년 이후 3-4회의 훈련을 하였으며 최근에 증가하여 2007년에 6회, 2009년에 12회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훈련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이 도발적인 경고를 하였다.²⁴⁾

소련 유학파 출신인 류화칭(劉華淸)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은 1982부터 1988년까지 장기간 재임하면서 미국이 1950년대 냉전시대에 소련과 중국의 아시아 공산주의 세력 팽창을 봉쇄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았던 두 개의 ‘도련선(Island Chain)’²⁵⁾을 넘어설 수 있는 근해방어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외교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선포한 해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것도 중국인민해방군해군의 중요한 임무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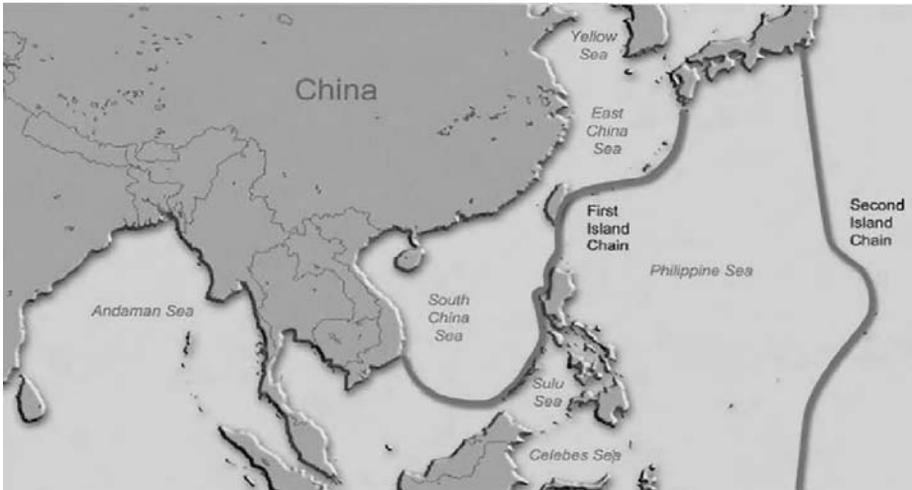
23) Justin Logan, "China, America, and the Pivot to Asia", *Policy Analysis*, No.717, Cato Institute, (2013), p.9.

24) Mathieu Duchel, *China's Sea Power, Reaching out to the Blue Water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1), p.4.

25) 제1도련선은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북부 해역으로 연결되는 선이고, 제2도련선은 일본 중부에서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마리아나 제도, 뉴질랜드로 연결되는 가상선이다.

26)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p.10.

〈그림3〉 중국의 제1,2도련선



출처: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p.5.

중국해군이 제1도련을 넘어 제2도련을 돌파하려는 목적은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중국해군은 양안문제의 대비, 해양주권의 수호, 해양수송로의 보호 등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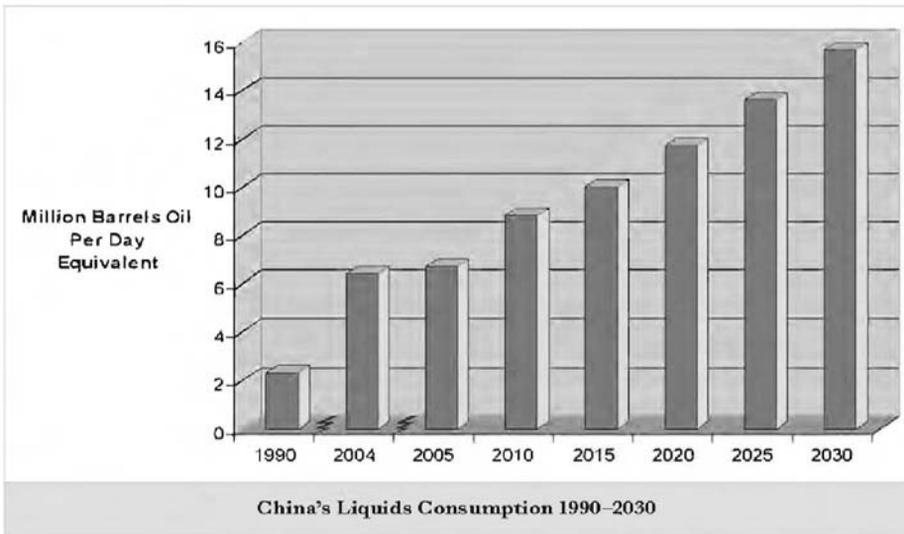
냉전체제가 해체된 후 유일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에 대하여 중국이 패권도전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미국에 순응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²⁷⁾ 그러나 중국이 급격한 성장과 군사적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중국의 자세는 동북아의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하게 하였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하면서 이어도해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부각되었다. 작전 반경이 1000km에 달하는 미 7함대 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훈련에 참여하면서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노출되게 된 것이다. 항모 조지 워싱턴호는 길이가 333m, 폭은 78m, 면적은 1만8211m²로 비행갑판에는 미 해군 최신예 전투기 슈퍼호넷(F/A-18E/F)과 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인

27) Jia Qingguo, "Learning to Live with the Hegemon: Evolution of China's Policy toward the U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 44, August 2005, p. 395.

E-2C(호크아이 2000) 등 항공기 60여대가 탑재돼 있고 4척의 이지스 순양함, 7척의 구축함, 1~2척의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항모전투전단을 이루고 있으며, 작전반경은 1000km에 달한다.²⁸⁾ 중국의수도 베이징을 작전반경에 포함하는 미국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다분히 대중 위협을 내포하는 것이다.²⁹⁾

〈그림 4〉 중국의 원유소비량



출처: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p.11.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원유와 자원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로 진출한 경제력과 중국 본토와 연결되는 말라카 해협의 해양수송로의 안정화는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해양수송로의 안정화에 달려 있으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해양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의 해양갈등은 더 공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 해군의 3단계 전략임무는 연해 방어 위주의 ‘황수이(黃水·yellow water)’→영해와 영토를 수호하는 ‘뤼수이(綠水·green water)’→에너지 수송노선 수호의 ‘란수이(藍水·blue water)’인데 중국 해군이 ‘뤼수이’에서 ‘란수이’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³⁰⁾

28) 『세계일보』 “美 조지워싱턴호 항모감습단 방한”(2011.9.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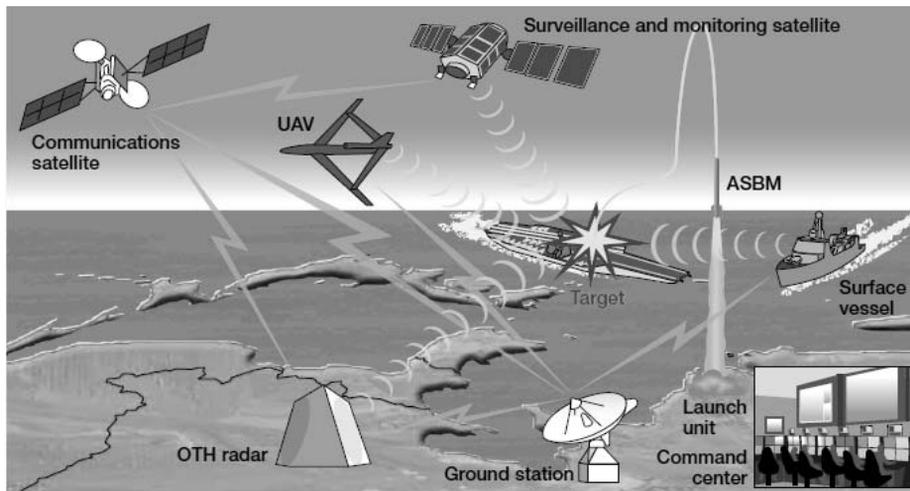
29) 엄상윤,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 문제의 향방”,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10년 9월호), P.10.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어도문제에 대하여 중국이 지나치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어도해역에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긴 하였으나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칭적인 전력을 구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비대칭전략(asymmetric strategy)에 기반해 미사일 공격능력을 중심으로 잠수함, 대위성무기, 사이버전쟁수행능력 등을 강화해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A2/AD)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³¹⁾ 중국의 해양전략인 A2/AD 전략은 미국은 물론 적성국가의 해양력이 중국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Anti Access)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격퇴(지역거부, Area Denial)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제정치 관념에 입각해서 볼 때 대단히 공격적인 전략이다.³²⁾

지난 2011년 7월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린 제독이 DF-21D에 대하여 중국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에게 질문하자 “아직 연구단계”라는 답변을 하여 공식적으로 동평-21미사일 개발을 시인하였다.³³⁾

〈그림 5〉 중국의 대함탄도 미사일 운용도



출처: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2012) p.15.

30) 『동아일보』 2012년 3월 13일. “中 해군력, 남한 어디든 하루 새 수천명 상륙 가능” 참조.
 31) 최우선,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가와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2011) p.1.
 32) 이춘근,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STRATEGY21』pp.57-58.
 33)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2012) p.14.

〈그림5〉에서 보듯이 중국이 동풍-21(DF-21D)로 이름붙인 대함탄도 미사일은 일본에 모항을 두고 한반도 지역까지 오가는 미국의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격침을 위해 새로 개발한 동풍(東風)-21 미사일을 중국 전역의 인민해방군 부대에 배치할 완료했고, 제12차 5개년기획(12·5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중국의 방어능력을 대폭 증강시켜 사정거리가 3,000km 이상인 신세대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가 20일 보도했다.³⁴⁾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한국전역이 제1도련선 안에 있으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외안보를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고 중국이 해석하는 것처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주권적 관할권을 한국이 갖게 된다면 중국해군의 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양국의 중첩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방적인 활동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2005년 이후 이어도에 해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대200해리에서 중국해군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경제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어도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시키면서 배타적해양경제획정에 응하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을 고려한다면 현상대유지를 더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안보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된다.

IV. 맺음말 : 이어도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공식수교 이래 경제, 통상 분야에서 발전하여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 수출대상국 및 제1위 흑자대상국(234억불)으로 변화하였고 한국도 중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한

34) 『한국일보』, 2011년 2월 20일. “中 ‘항모킬러’ 동풍-21 미사일 배치 완료” 참조

중 양국은 1997년 ‘선린우호관계’에서 2002년 ‘협력동반자관계’로 2007년 ‘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군사안보 관계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연 1회 교대로 주최하는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고 한국의 합참의장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교역증가로 협력외교와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긍정적인 한 중 관계에서 이어도 쟁점은 잘못 관리되면 관계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어도 쟁점이 부각된 것은 유엔해양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과거에 공해였던 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하여 연안국에게 관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부상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당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혹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평화로운 갈등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해 선언을 기탁하여 일방적으로 강제분쟁해결절차회부를 회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4월 18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1항에 의거하여 협약상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선언을 기탁하였고 중국도 2006년 8월 25일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을 하여서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상황이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 문제에서 중국이 경제적문제와 해양법만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에서 협상을 개시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한 주장의 요소들 가령 해안선의 길이나 여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해군전력의 증강과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로 전략을 변화하면서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중국해군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주변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이 팽창하는 것을 울타리를 치듯이 포위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어도해역과 오키노토리시마해역은 중국해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였을 경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잠수함의 이동을 포함한 해군작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의 획정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적이며 중앙권위체가 없으므로 안보를 자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군사력이 약할 경우 동맹으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안보적 이해가 걸려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고려를 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이 중국해군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한다면 배타적경제수역획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대미관계와 대한관계를 원할 것이므로 상당 기간 이어도쟁점이 부각되거나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래에 중국이 지역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미국이 강력한 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하거나 중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하지만 중국이 중요한 교역국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획정 협상에서 경제적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활동을 제약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주장을 해 왔으나 해군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처럼 항행의 자유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협상에서 경제적 관할권에 중점을 두고 항행의 자유를 최대한 용인한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해양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이어도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 수호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한편으로 국민들에게 이어도문제에 대한 정연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도가 수중암초라는 사실을 잘못 알고 영토나 영해를 지키자는 잘못된 여론형성은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협상을 어렵게 하며 한국의 해양이익을 수호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석규, “이어도 어장의 경제성 평가,” 『이어도연구』, 창간호(이어도연구회, 2010).
- 김용환, “중국의 해양경계선과 그 획정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해양정책연구』제23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김태준, “중국의 해양 영토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제78호(한국국방연구원, 2007년 겨울).
- 김학린,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박춘호, “한국의 대륙붕 경계문제,” 『고려대학교 법학논집』, 제21집(1983).
- 송원오, “Socotra Rock에 관한 소고,” 『대한토목학회지』, 제32권 제3호(1984).
- 심재설·박광순·이동영,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1권 제2호(1996).

엄상윤,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 문제의 향방”, 『정세와 정책』(세종연구소, 2010년 9월호).

외교통상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보도참고자료』, (2006년 9월 15일).

이동률, “중국의 영토분쟁과 해결-쟁점과 요인,” 이동률 외, 『중국의 영토분쟁』(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2008).

이석용,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2007).

이윤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제17권 제4호, (한국항해항만학회, 1993).

이춘근, “해양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STRATEGY21』Vol..15, No.2.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최우선, “중국의 지역접근저지 능력 증강과 미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11) .

『노컷뉴스』, “中 순찰범위에 ‘이어도’ 포함...韓·中 신경전” (2012.3.10).

『동아일보』, “中 해군력, 남한 어디든 하루 새 수천명 상륙 가능”(2012. 3. 13).

『세계일보』, “美 조지워싱턴호 항모강습단 방한”(2011.9.28)

『조선일보』, “중국 이어도 편입 시도 노골화”(2008. 8. 7).

『조선일보』, “중(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다시 철회”(2008. 8. 16).

『중앙일보』, “미·중, 하와이 ‘TPP 충돌’”(2011.11.14).

『중앙일보』 “한중 국방전략대화...軍 北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 중에 전달”(2012. 7. 31).

『한겨레신문』 “이어도 ‘제2의 독도’ 되나”(2008. 8. 8).

『한국일보』, “中 ‘항모킬러’ 동평-21 미사일 배치 완료” (2011. 2. 20).

Brown E.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 (Aldershot, England: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4).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Fravel, M. Tayler, “Regime In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laining China's Compromises in Territorial Disput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Fall 2005).

International Crisis Group, “Northeast Asia's Undercurrents of Conflict,” Asia Report, No.108(15 December 2005).

Jiao, Wu, “Defense budget growth slows”, China Daily(2013.3.6).

Korea Times, "Lee: Jeodo will remain under Korea's control," *Korea Times*, (2012.3.12).

Lee, Pak K., “China's Quest for Oil Security: Oil (Wars) in the Pipeline?” Pacific Review, Vol. 18, No. 2(June 2005).

Lee, Seokwoo,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Territorial

- Disputes in East Asia,”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Vol. 11, No. 1(January 2002).
- Logan, Justin, "China, America, and the Pivot to Asia", Policy Analysis, No.717, Cato Institute, (2013).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1).
- Odom, Jonathan, G., What Does a “Pivot” or “Rebalance” Look Like? Elements of the U.S. Strategic Turn Towards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ts Waters,"*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Vol. 14, No. 1, (2012).
- O'Rourke, Ronald,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 December 10, 2012).
-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Office of Naval Intelligence, 2009).
- Page, Jeremy, “China, South Korea in Row Over Submerged Rock,”*Wall Street Journal*, (March 14, 2012).
- Qingguo, Jia, “Learning to Live with the Hegemon: Evolution of China’s Policy toward the U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4, no.44,(August 2005).
- Singh, Mandip and Kumar, Lalit, "China's Defence Budget 2012: An Analysis", IDSA Issue Brief,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2012),p.2.
-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1, Japan*(2012) p.14.
-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6, 2006).
- Wu, Xu, *Chinese Cyber Nationalism: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7.
- Xinhua, “U.S. owes China convincing explanation of true intentions of its Asia Pivot policy,”(2012.9.3).
- Xinhua, “China issues white paper on national defense,” Xinhua, (2013.4.16).

Abstract

Jeodo Issue and the evolution of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Strategy

Kang Byeong-Cheol*

Jeodo is a submerged rock within a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EEZ) in the East China Sea with its most shallow part about 4.6m below the sea level which has no specific rights for the EEZ delimit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tipulates that any coastal state has the rights to claim an EEZ that stretches up to 200 nautical miles from its shore, except where there is an overlap with a neighboring country's claims.

Korea claims that Jeodo is within its EEZ as it sits on the Korean side of the equidistant line and the reef is located on the Korea sec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hina does not recognize Korea's application of the equidistance principle and insists that Jeodo lies on its continental shelf. According to UNCLOS, Jeodo is located in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as the two countries have failed to reach a final agreement over the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rder.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PLAN) strategy as main obstacles for the EEZ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LAN's Strategy evolves from "coastal defense" to "offshore defence", since the late 1980s from a "coastal defence" strategy to an "offshore defence" strategy which would extend the perimeter of defence to between 200 nm and 400 nm from the coast. China's economic power has increased. It's dependence on open trade routes for energy supplies and for its own

* Society of Jeodo Research

imports and exports, China want secure Sea Lane.

PLAN's "offshore defence" strategy combines the concept of active defence with the deployment of its military forces beyond its borders. China's navy try to forward base its units and to achieve an ocean going capability. China's navy expects to have a 'Blue Water' capability by 2050.

China insists that coastal states do have a right under UNCLOS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foreign military forces in their EEZs. China protests several times against US military forces operating within It's EEZ. The U.S. position is that EEZs should be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s reflected in UNCLOS. U.S. has a national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freedom of navigation as recogniz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and reflected in UNCLOS. U.S. insists that coastal states under UNCLOS do not have the right to regulate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ir EEZs.

To be consistent with its demand that the U.S. cease performing military operations in china's EEZ, China would not be able to undertake any military operations in the waters of South Korea's EEZ. As such, to preserve its own security interests, China prefers a status quo policy and used strategic ambiguity on the leodo issue.

PLAN's strategy of coastal defence has been transformed into offensive defence, Korea's EEZ can be a serious limitation to PLAN's operational plan of activities. Considering China'a view of EEZs, China do not want make EEZ delimitation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argues that the overlapping areas between EEZs should be handled through negotiations and neither side can take unilateral actions before an agreement is reached. China would prefer leodo sea zone as a international waters, rather than one country's EEZ.

Keyword: leodo, submerged rock, EEZs, PLAN's Strategy, limitation to PLAN's operational plan.